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검찰
PROSECUTION SERVICE

대검찰청

대변인실

전화 02-3480-2100 / 팩스 02-3480-2704

보도자료
2021. 4. 16. (금)

자료문의 : 대검 인권감독담당관
전화번호 : 02-3480-2870
주책임자 : 인권감독담당관

제 목 구치감 수용거실 내 화장실 차폐시설 등 표준안 시행

- 대검 인권감독담당관실에서는 일선 검찰청을 대상으로 각종 인권보호 제도의 효율적인 정착을 위해 2019. 4분기부터 인권보호 업무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왔습니다.
- 인권보호 업무 이행실태 점검 항목 중 하나로 구치감(검찰 조사를 위한 체포자, 수용자 등 조사대기 장소)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한 결과, 일부 검찰청의 구치감 내 화장실이 완전히 밀폐가 되지 않는 일부 개방형 구조이고, 일부 화장실은 밀폐형이더라도 차폐시설(가림시설)의 화장실 바닥부터의 높이가 기준보다 낮게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.
- 이러한 화장실 구조는 화장실 사용과 관련된 프라이버시 보호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권보호 측면에서 미흡한 것이었습니다.
※ 총 59개 검찰청 중 화장실 차폐시설이 기준높이에 맞지 않는 검찰청 29개청, 일부라도 개방형 구조의 화장실이 설치된 검찰청 23개청
- 이에, 대검은 2021. 4. 15.자로 전국 검찰청에 '화장실이 일부 개방형 구조인 경우 완전 밀폐형으로 개선하고, 설치된 차폐시설 높이를 기준에 따라 정비'하는 내용의 시설 표준안을 마련하여 시달하고, 개선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.

- 대검은 향후 일선 검찰청 인권보호업무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시설 표준안 준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며 인권친화적인 검찰청 조사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.

< 차폐시설 설치 예시 >



※ 「차폐시설」이란 수감중인 수용자가 수용거실 내 화장실을 이용할 때 옷을 추스르는 과정에서 같은 수용거실 내 수용자 또는 외부의 교도관 등에게 허벅지 등 하반신이 노출되지 않도록 창 또는 출입문에 화장실 바닥부터 일정 높이까지 불투명하게 설치한 가림 시설을 총칭